2023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공고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초기 유망 창업기업을 성장단계별로 발굴·지원하기 위한 『2023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민간 투자사^{*}를 통해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정부자금을 매칭 지원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활성화 도모
 - * 엔젤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창업기업 선별,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추고 있는 창업기획자, 초기전문VC, 벤처·중소기업 및 대·중견기업 등

□ 팁스 세부사업별 현황

세부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규모	지원 기간	지원 한도	기업 부담	신청 접수	선정 평가
팁스 (TIPS)	팁스(R&D)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 및 추천을 받은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2,366억원 (신규 600개 내외, 계속, 종료 포함)	규 600개 24 최대 외, 계속, 개월 5억원 총		총 연구비의		
	딥테크 팁스 (R&D)		탑스 운영사로부터 투자 및 추천을 받은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중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 기업	315억원 (120개 내외)	36 개월	최대 15억원	20% 이상	수시	수시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 (비R&D)	창업 사업화 해외 마케팅	팁스(R&D) 및 - 딥테크 팁스(R&D) 선정 창업기업	756억원 (신규 756개 내외)	10 개월	각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30% 이상	수시	수시

* 자세한 내용(신청 자격, 접수 일정 등)은 세부 사업별 지원계획에서 확인

2. 주요 변경·개선 사항

□ '23년 주요 변경·개선 사항

< 주요 변경·개선사항 정리 >

순번	구 분	′22년 기존	′23년 개선
		■ 팁스(R&D)	■ 팁스(R&D)
		- 신규 500개 과제 지원	- 신규 600개 과제 지원
			■ 딥테크 팁스(R&D) 신설
			- 신규 120개 과제 지원 * 팀스(R&D)와 별도 ·평가 진행
1	지원규모 확대		- 답스(ROU)와 필도 공가 전형 - 투자재원 유형과 관계없이 투자금·연구개발비 매칭 비율을 1:5로 일원화 * 고유형·펀드형 모두 3억원 이상 의무투자 시, 신청 가능
		■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신규 과제 525개	-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신규 과제 756개
2	선정평가 단축	■ 선정 절차	■ 선정 절차
		- 서면/대면 평가 진행	- 선정(대면)평가 일원화
		■ 패스트트랙 적용	■ 패스트트랙 적용
3	패스트트랙 개편	- 서면평가 결과 우수평점 창업 기업 대상 대면평가 면제	(딥테크 팁스) - 기술성 평가(1차평가) 우수기업 대상 사장성 평가(2차평가) 면제
			* 팁스(R&D)는 서면평가와 대면 평가 통합으로 패스트트랙 미적용
	재추천 확대	■ 재추천 제한 완화	■ 재추천 제한 완화
4		- 창업기업(법인)별 총 2회 신청 가능	- 창업기업법인별 연 2회 신청 가능 * 사업연도 변경 시, 재추천 횟수 초기화
	가점	■ 신성장 육성 분야 가점	■ 신성장·첨단 미래산업 가점
5	산업분야 변경	- 4차 산업혁명, 소재·부품·장비, 디지털 기술 및 비대면 분야	- 소재·부품·장비(9대, 113개) -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

3.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 접수, 평가, 선정 등 추진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팁스 홈페이지(www.jointips.or.kr) 또는 개별 안내 등을 통해 통지 예정

(1) 팁스(R&D)

□ 사업개요

○ 팁스 운영사가 창업기업을 선별하여 1~2억원의 투자 후 추천하면, 정부는 R&D, 창업사업화 등 최대 7억원을 매칭 지원(추가 후속 연계지원 별도)

팁스 운영사란?

- 엔젤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창업기업 선별,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추고 있는 창업기획자, 초기전문 벤처캐피탈, 벤처·중소기업 및 대·중견기업 등으로,
- 유망한 창업기업을 발굴·선별하여 엔젤투자와 보육, 멘토링하는 기관·기업
- 팁스 운영사의 투자 및 추천을 통하여 동 사업에 참여 가능
- 현재 활동 중인 운영사 현황(www.jointips.or.kr, ABOUT TIPS NEWS) 참고
- ※ 팁스 운영사는 단순 접수처가 아닌 사업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을 선별 투자하는 기관
- □ **지원 규모** : 600개 과제, 총 2,366억원(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별도)
 - * 각 사업별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 지원 분야 (자유 공모)

- 창업기업이 희망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자유롭게 제안
- 창업기업이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 부여 [붙임2 참조]
- * (소재·부품·장비 분야) 9대 분야, 113개 품목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L,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워전, 양자기술

□ 지원 내용

< 2023년 팁스 창업기업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사업 기간 ¹⁾	엔젤투자금 ²⁾ (팁스 운영사)	총 연구개발비(A+B)				
기간 ¹⁾		정부지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B)		연계지원	
		연구개발비(A)	현금	현물		
최대	1~2억원 내외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A)의 최소 20% 이상)	최대 5억원	해당 금액	해당 금액	• (창업사업화) 최대 1억원 차등지원 (자부담 30%이상 : 현금 10%이상, 현물 20% 이하	
3년		총 연구개발비(A+B)의 80% 이내	(현금은 기관부	l의 20% 이상 담연구개발비의 이상)	• (해외마케팅) 최대 1억원 차등지원 (자부담 30%이상 : 현금 10%이상, 현물 20% 이하	

- 1) 정부지원이 매칭되는 기간은 연구개발비 최대 2년, 연계지원 최대 10개월 이내
- 2) 운영사의 엔젤투자금은 투자기업(창업기업)의 지분확보를 조건으로 함 (단, 운영사의 지분율은 30% 이하)
- <u>자금 지원</u>: 운영사의 엔젤투자금(1~2억원 내외)에 정부가 연구개발비(최대 5억원)을 매칭 지원하고,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등을 연계지원

엔젤투자금 인정 기준

- 추천 마감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해당 기업을 추천한 운영사의 투자금액
- 운영사는 '창업기업 투자·보육 운영방안'을 준수하여 창업기업과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엔젤투자 여부, 조건 및 투자금액을 결정
- 엔젤투자금의 재원 유형에 따라 의무투자금액이 상이^{*} (고유계정형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펀드형은 40% 이상 투자 필수)
- * 단 추천기업이 시드팁스 성공기업 또는 비수도권 소재 프리팁스 성공기업인 경우 투자유형과 관계없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투자 필수
- 비수도권 소재 프리팁스 성공기업의 경우, '프리팁스 신청 당시의 엔젤투자금'을 '팁스 운영사 엔젤투자금'과 합산하여 정부자금이 매칭되는 투자금으로 인정
 - * 단, 프리팁스 엔젤투자금은 전체 인정투자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팁스 선정 후, 투자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불가(중단) 및 선정취소
- 연계지원(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은 사업별 신청이 필요하며 세부 사업별 요건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
- 기타 지원 : 운영사가 보육·멘토링, 글로벌 진출 등을 종합 지원
 - 운영사 지정 보육시설(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보육, 멘토링 등 운영사별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
 - * 보육시설(인큐베이터)은 운영사의 자체 또는 협력기관(운영사 컨소시엄)의 보유 공간

□ 지원 대상

- (공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로 아래 세부 사업별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 '업력'은 해당 평가 월의 접수마감일 기준 산정 및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 (R&D)

- ①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확약) 후 추천된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기업 (2인 이상 구성필요)
- *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 신청 가능(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및 기본 자격요건 충족 필요)
- ※ 신청 시, '창업기업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붙임3 참조]
- * '창업기업 확인서'는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에서 신청 가능
- ② 창업기업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 운영사 지분율은 30% 이하로 유지**
- * 창업기업 지분 60% 이상을 대표자 등 창업기업 구성원 2인 이상이 보유해야 함
- ** 창업기업 추천 마감일부터 최종 선정 후 협약체결일까지 지분율 유지 의무
- ③ 직전 연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
- * 단, 제안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직전 연도 매출액이 성공조건(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연계지원) 팁스 기술개발사업(R&D) 선정기업 대상
- <u>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u>: 구체적인 아이템의 사업화 계획 또는 글로벌 진출전략·계획을 보유한 창업기업 (다만, 연계지원사업 신청 시 업력 7년을 초과하는 경우 참여 불가)
- * 통합평가(R&D+연계지원)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각 연계지원사업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자격 미달 시, 평가 대상 제외)
- ** 팁스 수행기업 중 연계지원사업 미참여 기업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안내

□ 지워제외

◆ 팁스 (R&D)

- ① 팁스에 선정되어 지원(R&D,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받은 창업기업(재참여 불가)
- ② 현재 시드팁스, 프리팁스 또는 팁스-R을 수행 중인 기업(졸업 후 참여가능)
-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붙임3 참조)
- ④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또는 '지원제외' 중인 경우
- 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 ⑥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신청 제외 세부사항은 「붙임4. 팁스 신청제한 및 유의사항」 및 「팁스 총괄 운영지침」 참조

◆ 창업사업화 (비R&D)

- ①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창업기업은 사업 종료 후 참여 가능
 - *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동시 신청으로 중복 선정시 각 사업의 협약체결일 이전에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고,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함
- ② 창업사업화 사업 이외 바우처사업(세무회계바우처, 비대면바우처, 성장촉진 바우처 등) 및 해외진출 인력채용 지원사업의 경우 중복 가능
- ③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은 협약 종료일로부터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선정 후 사업 협약기간 중복시에는 협약 불가
- ④ 선정이후 사업수행 중, 중복여부를 재확인하여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 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5. 팁스 창업사업화 및 해외마케팅 관련 안내」 참조

□ 선정 절차

창업기업 선정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일부 절차의 경우 사업 운영현황 및 시기에 따라 동시 또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음

< 팁스 신청 및 선정 절차 >



- * 통합평가를 미신청한 경우, 연계지원사업(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은 별도평가를 통해 선발
- ** (운영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담기관) 창업진흥원(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1회만 진행 가능하며, 운영기관으로 신청

① 신청.접수 (창업기업 → 팁스 운영사)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별도 접수기간 없음)
 - '팁스 사업설명회' 일정 및 참여방법은 팁스 홈페이지(www.jointips.or.kr) 공지 예정
- <u>신청방법</u> : 팁스 운영사별 자체 공모 참여, 투자심사역 면담, 이메일 등 운영사에 개별 문의^{*}
 - * [붙임1] 팁스 운영사(신청·접수처) 현황" 및 팁스 사업 홈페이지(www.jointips.or.kr) 참조
- 신청양식은 운영사별 지정 또는 창업기업 자율 양식으로 활용 가능
- ※ <u>창업기업은 복수의 팁스 운영사(추천권 보유 협력기관 포함)에 투자제안이 가능하나,</u> 팁스에 지원하기 위한 추천은 1개 운영사에서 받아야 함

②~③ 투자심사 및 창업기업 추천 (팁스 운영사 → 운영기관)

- 운영사 자체 심사를 통해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투자 (확약)한 창업기업을 운영기관에 추천 (운영사별 연간 추천 T/O범위 내)
 - * 창업기업 사업 분야가 운영사의 전문 투자분야가 아닌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운영사가 창업기업 추천 시, 연구개발비와 함께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지원을 선택하여 동시 신청 및 통합평가 가능
 - * 사업 신청 시 항목에 표기하지 않거나, 해당 사업 연구개발계획서 누락 시 대상에서 배제
 - 다만, 팁스에 선정되어도 사업화 계획 및 글로벌 진출전략·계획이 미흡한 경우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연계지원사업을 동시 신청하지 않은 경우, 향후 팁스 수행기업(기존 선정 기업 포함)을 대상으로 사업별 별도 모집 안내 및 선정 절차 실시 예정
- 추천된 창업기업은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에 등록(접수마감일 기한 내 미등록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o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 - 이용메뉴얼 : '알림·고객' → '자료실' → 'IRIS 사용 매뉴얼' 참조
- o 연계지원사업 과제관리시스템: www.k-startup.go.kr
- 고객센터 → 온라인 매뉴얼 → 창업사업 매뉴얼 → 시스템 매뉴얼 → 매뉴얼목록 → 9.[신규)창업 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사용자매뉴얼* 에서 온라인 사업 신청 매뉴얼 확인 가능

④ 사전검토 (전문/운영기관)

○ 창업기업의 기본 신청자격(지분, 의무사항, 채무불이행, 과제의 중복성 등) 및 운영사-창업기업 간 투자계약의 적절성 등을 검토

⑤ 선정평가 (전문/운영기관)

○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창업기업 역량, 기술아이템 전문성, 운영사의 투자 및 지원계획 등을 운영사(시장성)·창업기업(기술성)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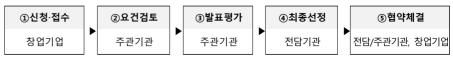
※ 종합평점 = 선정평가(100%) + 가점(최대 3점)*

- * 가점 : ①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소재 창업기업이 최종 선정 이후 협약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잔류를 확약하는 경우(확약서 제출) (2점)
 - ② 내일채움공제(플러스) 도입·운영 (1점)
 - ③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 (1점)
 - ④ 프리팁스(Pre-TIPS), 팁스-R(TIPS-R), 시드팁스 '성공' 기업 (1점)

⑥ 최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 평가 절차를 모두 통과한 창업기업에 대해 종합평점,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R&D) 및 연계지원사업(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지원 여부와 함께 기간, 지원 금액을 결정
- 통합평가 미신청 창업기업의 경우 아래의 별도평가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 (자세한 선정절차 및 유의사항은 [붙임5] 참조)

< 연계지원사업(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별도평가 절차 >



* (주관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 ⑦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연계지원사업 지원 (전문/전담기관 등)
- (R&D) 창업기업-전문기관 간 협약체결 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최대 5억원) 지급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납부
-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자금) 창업기업-주관기관-전담기관 간 3자 협약 체결 후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자금 차등 지원

⑧ 사업수행

- 지정 보육시설(인큐베이터) 등에 입주하여 운영사의 멘토·보육 지원을 받으며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수행
- 연차 종료 시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운영사-창업기업이 제출한 연차 보고서를 검토하며, 전문/운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시적 으로 사업수행 결과물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최종평가(개발목표 달성 및 사업화 성공요건 달성 여부 평가)를 통해 "우수", "보통", "미흡", "극히불량^{*}" 여부 판정
 - * '극히불량' 판정 과제의 경우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한 제재사항 결정
 - "우수" 또는 "보통" 과제의 경우 향후 '포스트팁스'를 통해 추가지원 기회를 제공

< 사업화 성공요건 >

- ㅇ 아래 사업화 성공 요건 6가지 중 1가지 이상 충족
- ① M&A성사 (10억원 이상)
- ② 기업공개 (IPO, 코넥스 포함)
- ③ 기술개발 및 사업화 아이템 관련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 ④ 기술개발 및 사업화 아이템 관련 연간 수출액 50만불 이상
- ⑤ 후속 투자유치*
- * 팁스 선정 후 후속투자유치액이 최근 3년간 국내 벤처캐피탈 업계 평균 투자금 이상인 경우
- ⑥ 신규고용 20명 이상

(2) 딥테크 팁스(R&D)

□ 사업 개요

○ 팁스 운영사가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의 창업기업을 선별하여 3억원 이상 투자 후 추천하면, 정부는 연구개발비(R&D) 최대 15억원을 매칭 지원

<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 >

10대 분야	세부 분류(예)
❶ 시스템반도체	로직·아날로그 IC, 마이크로컴포넌트
❷ 바이오·헬스	의약, 임상기술, 의료기기
❸ 미래모빌리티	전기·수소차, 자율주행
4 친환경⋅에너지	자원순환, CCUS, 친환경 신소재, 신재생, 이차전지, 에너지 절감
③ 로봇	지능형·서비스 로봇, 스마트시스템
③ 빅데이터·AI	컴퓨터비전,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고객데이터플랫폼, AloT
	복호화, 블록체인, 5:6G, 무선통신, 클라우드, 메타버스, 모바일 엣지컴퓨팅
③ 우주항공·해양	위성, 발사체, 기지국, 비행체, 첨단선박
9 차세대원전	원자로, 원전 재료, 안전기술
① 양자기술	양자컴퓨터, 양자센서, 양자통신

□ 지원 규모 : 120개 과제, 총 315억원(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별도)

□ 지원 내용

< 2023년 딥테크 팁스 창업기업 지원내용 >

	지원내용					
사업	엔젤투자금 ¹⁾	총 연구개발비(A+B)				
기간	(팁스 운영사)	정부지원 연구개발비(A)	기관부담연 현금 ²⁾	구개발비(B) 현물 ³⁾	연계지원 ⁴⁾	
최대	3억원 이상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A)의 최소 20% 이상)	최대 15억원	해당금액	해당금액	• (창업사업화) 최대 1억원	
		총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차등지원 (자부담 30%이상 : 현금 10%이상 현물 20% 이하)	
4년		중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현금은 기관부	1의 20% 여성 담연구개발비의 이상)	• (해외마케팅) 최대 1억원 차등지원 (자부담 30%이상 : 현금 10%이상 현물 20% 이하	

- 1) 운영사의 엔젤투자금은 투자기업(창업기업)의 지분확보를 조건으로 함 (단, 운영사의 지분율은 30% 이하로, 창업기업의 경영권 보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정)
-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은 운영사의 엔젤투자금으로 부담 가능
- 3)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 및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기고용인력의 인건비, 기자재, 재료비, 기술도입비로 부담 가능 (단 R&D 등 사업별 협약기간 동안 중복계상 불가)
- 4) 연계지원의 경우 딥테크 팁스(R&D)에 선정된 창업기업 대상으로 별도 선정평가후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지원 예정

- **자금 지원**: 운영사의 엔젤투자금(3억원 이상)*에 정부가 연구개발비 (최대 15억원)을 매칭지원하고,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등을 연계지원
 - * 딥테크 팁스의 경우, 운영사 투자재원별 인정비율 동일(고유형·펀드형 모두 100% 기준 적용)
 - 연계지원(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은 딥테크 팁스 선정 이후 별도 신청을 통해 세부사업별 요건 및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
- 기타 지원 : 운영사가 보육·멘토링, 글로벌 진출 등을 종합 지원
 - 운영사 지정 보육시설(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운영사의 보육 및 멘토링 등 운영사별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
 - * 보육시설(인큐베이터)은 운영사의 자체 또는 협력기관(운영사 컨소시엄)의 보유 공간

□ 지워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5조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 '업력'은 해당 평가 월의 접수마감일 기준 산정 및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함
- ※ 신청 시, '창업기업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붙임3 참조]하여야 하나,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상 지났으며 10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에 한하여 '창업기업 확인서' 제출 불요(「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4항 해당 여부는 평가과정에서 별도로 확인 예정)
- 팁스 운영사로부터 3억원 이상 투자*받은 후 추천된 창업기업(2인 이상 구성필요)
 - * 지원대상 기업을 추천하는 운영사로 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계약 체결 필요
- ㅇ 창업기업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 운영사 지분율은 30% 이하로 유지**
 - * 창업기업 지분 60% 이상을 대표자 등 창업기업 구성원 2인 이상이 보유해야 함
- ** 창업기업 추천마감일부터 최종선정 후 협약체결일까지 지분율 유지 의무
- ㅇ 직전 연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
 - * 단, 제안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직전 연도 매출액이 성공조건(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연계지원) 딥테크 팁스(R&D) 선정기업 대상
-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 구체적인 아이템의 사업화 계획 또는 글로벌 진출전략·계획을 보유한 창업기업 (다만, 딥테크 팁스(R&D)에 선정된 창업기업의 경우 연계지원 사업신청 시, 업력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참여불가)

□ 지원제외

◆ 팁스 (R&D)

- ① 팁스에 선정되어 지원(R&D.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받은 창업기업(재참여 불가)
- ② 현재 시드팁스, 프리팁스 또는 팁스-R을 수행 중인 기업(졸업 후 참여가능)
-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붙임3 참조)
- ④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또는 '지원제외' 중인 경우
- 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 ⑥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신청 제외 세부사항은 「붙임4. 팁스 신청제한 및 유의사항」 및 「팁스 총괄 운영지침」 참조

◆ 창업사업화 (비R&D)

- ①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창업기업은 사업 종료 후 참여 가능
 - *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동시 신청으로 중복 선정시 각 사업의 협약체결일 이전에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고,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함
- ② 창업사업화 사업 이외 바우처사업(세무회계바우처, 비대면바우처, 성장촉진 바우처 등) 및 해외진출 인력채용 지원사업의 경우 중복 가능
- ③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은 협약 종료일로부터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선정 후 사업 협약기간 중복시에는 협약 불가
- ④ 선정이후 사업수행 중, 중복여부를 재확인하여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 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5. 팁스 창업사업화 및 해외마케팅 관련 안내」참조

□ 선정 절차

o 창업기업 선정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일부 절차의 경우 사업 운영현황 및 시기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딥테크 팁스 신청 및 선정 절차 >



- * (운영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선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만 진행 가능하며, 전문기관으로 신청

① 신청.접수 (창업기업 → 팁스 운영사)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별도 접수기간 없음)
 - '팁스 사업설명화' 일정 및 참여방법은 팁스 홈페이지(www.jointips.or.kr) 공지 예정
- <u>신청방법</u> : 팁스 운영사별 자체 공모 참여, 투자심사역 면담, 이메일 등 운영사에 개별 문의^{*}
 - * [붙임1] 팁스 운영사(신청·접수처) 현황" 및 팁스 사업 홈페이지(www.jointips.or.kr) 참조
 - 신청양식은 운영사별 지정 또는 창업기업 자율 양식으로 활용 가능

②~③ 투자심사 및 창업기업 추천 (팁스 운영사 → 운영기관)

- 운영사 자체 심사를 통해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투자를 완료한 창업기업을 운영기관에 추천 (운영사별 연간 추천 T/O범위 내)
 - * 창업기업 사업분야가 운영사의 전문투자분야가 아닌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추천된 창업기업은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에 등록(접수마감일 기한 내 미등록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o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 - 이용메뉴얼: '알림·고객' → '자료실' → 'IRIS 사용 매뉴얼' 참조

④ 사전검토 (전문/운영기관)

○ 창업기업의 기본 신청자격(지분, 의무사항, 채무불이행, 과제의 중복성 등) 및 운영사-창업기업 간 투자계약의 적절성 등을 검토

⑤~⑥ 선정평가 (전문기관)

- (1차평가:기술성) 제출서류를 토대로 창업기업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딥테크 분야 적합성, 기술의 도전성과 혁신성, 기술의 독립성과 원천성, 및 기술개발 역량을 중점하여 평가
- 1차 평가(기술성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과제를 대상으로 2차 평가 (시장성평가)를 면제하는 '패스트트랙' 활용 가능

○ (2차평가: 시장성) 제출서류를 토대로 운영사·창업기업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시장분석의 적정성, 신시장 창출 가능성 및 파급성, 글로벌 진출 가능성, 리스크 관리 방안 및 기업경영 역량을 중점하여 평가

※ 종합평점 = 기술성 평가(60%) + 시장성 평가(40%) + 가점(최대 3점)*

- * 가점 : ①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소재 창업기업이 최종 선정 이후 협약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잔류를 확약하는 경우(확약서 제출) (2점)
 - ② 내일채움공제(플러스) 도입·운영 (1점)
 - ③ 프리팁스(Pre-TIPS), 팁스-R(TIPS-R), 시드팁스 '성공' 기업 (1점)

⑦ 최종 선정 및 협약체결 (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

- 각 평가절차를 모두 통과한 창업기업에 대해 종합평점,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여부와 함께 기간, 지원 금액을 결정
- 창업기업-전문기관 간 협약체결 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최대 15억원) 지급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납부

⑧ 사업수행

- 지정 보육시설(인큐베이터) 등에 입주하여 운영사의 멘토·보육 지원을 받으며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수행
- 연차 종료 시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운영사-창업기업이 제출한 연차 보고서를 검토하며, 전문/운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시적 으로 사업수행 결과물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개발목표 달성 및 사업화 성공요건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최종평가를 통해 "우수", "보통", "미흡", "극히불량" 여부 판정
 - * '극히불량' 판정 과제의 경우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한 제재사항 결정
 - "우수" 또는 "보통" 과제의 경우 향후 '포스트팁스'를 통해 추가지원 기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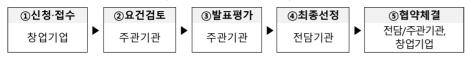
< 사업화 성공요건 >

- ㅇ 아래 사업화 성공 요건 6가지 중 1가지 이상 충족
- ① M&A성사 (10억원 이상), ② 기업공개 (IPO, 코넥스 포함)
- ③ 기술개발 및 사업화 아이템 관련 연간 매출액 15억원 이상
- ④ 기술개발 및 사업화 아이템 관련 연간 수출액 75만불 이상
- ⑤ 후속 투자유치*
- * 팁스 선정 후 후속투자유치액이 최근 3년간 국내 벤처캐피탈 업계 평균 투자금의 1.5배 이상인 경우
- ⑥ 신규고용 30명 이상

□ 딥테크 팁스(R&D) 연계지원(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선정 절차

○ 창업기업 선정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일부 절차의 경우 사업 운영현황 및 시기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연계지원사업(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별도평가 절차 >



* (주관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① 신청·접수

○ <u>신청대상</u> : 딥테크 팁스(R&D)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업력 10년 이내의 창업기업

○ <u>신청기간</u> : 딥테크 팁스(R&D) 수행기업 중 미참여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 <u>신청방법</u>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사이트 온라인 신청

② 요건검토

○ 창업기업의 기본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여부, 증빙자료 등 검토

③ 발표평가

○ 창업기업 대표자의 사업계획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을 통해 수익성, 사업 성장성, 글로벌 진출계획(해외마케팅의 경우 필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종합평점 = 발표평가(100점) + 가점(창업사업화 최대 1점, 해외마케팅 최대 3점)

< 사업별 가점 항목 및 점수 >

구분	구분 가점 세부 항목		비고	
창업사업화자금	1)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1점	최대 1점	
웨이마케티지그	1)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1점	최대 3점	
해외마케팅자금	2) 권역별 해당국가 언어 발표	3점	기대 3점	

* 1)의 가점의 경우, 사업 기간 종료 전까지 미이행 또는 유지하지 않을 경우 협약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불인정

④ 최종선정

○ 사업운영위원회 평가결과, 예산 운용 계획 및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창업기업별 지원 금액 배정 및 전담기관(창업진홍원)에서 최종 확정

⑤ 협약체결

- 창업기업-전담기관-주관기관 간 3자 협약체결 후 창업사업화 및 해외 마케팅 사업별 자금 차등지원(최대 1억원, 10개월)
 - * 전담기관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 한국엔젤투자협회

4. 기술료 납부: R&D

- **(납부대상)** 최종평가 "우수" 또는 "보통"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 **(납부방식)** 창업기업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창업기업은 운영사의 팁스 추천 시, 연구계발계획서에 사업화 성공 시예상매출액 및 연구개발 결과물의 비중(기여도)을 직접 제시
 - * 선정평가 시, 관련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우대
 - 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납부
 - * 세부내용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사후관리(기술료/성과/정산) 매뉴얼" 참고
- 기술료 납부방식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및 "팁스 총괄 운영지침"을 따름

5. 기타 공지사항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된 사항은 아래의 법령, 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 법(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행정규칙(훈령, 고시)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 기타 관리지침

- 팁스(TIPS) 총괄 운영지침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 신청 자격증빙, 투자내역, 가점 신청 등 신청서류 일체는 접수 마감일 이후 추가·보완제출 불가
- 평가·협약 진행 중 지원제외 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평가·협약 대상에서 제외(또는 협약해약)
- 운영사와 창업기업 간 투자계약(투자금, 지분율 등)은 운영사의 투자금 및 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보육·지원, 운영사로서의 사업수행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상호 간 자율적으로 협의 필요
 - * 단, 팁스 운영지침 내 "창업기업 투자·보육 운영 방안" 등에 따라 부적절한 투자계약은 환류하고, 이면계약, 차명·가장납입, 대가성 수수료 지급, 부정한 이익의 요구.약속. 취득 등 위법·부정한 행위가 있을 시에는 지원이 취소됨(운영사 지정 취소 가능)

6. 문의처

□ 팁스 지원사업 문의처

구 분		담당 기관	전화번호	
팁스 사업 (일	일반문의)	한국엔젤투자협회 팁스사업부	02-3440-7421	
팁스(R&D)	운영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평가팀	02-3440-7421	
딥테크 팁스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민간투자협력실	02-2280-0421 ~ 0423	
연계지원사업	주관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연계사업팀	02-3440-7421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민관협력창업실	(국번없이) 1357	
사업총괄(정취	백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시스테 저시	. □ ol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국번없이) 1877		
시스템·전산 문의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국번없이) 1661-5855	
엔젤투자 및 팁=	스추천 문의	팁스 운영사 78개사	붙임1 참조	
홈페이	지	(팁스) www.jointips.or.kr (연계지원사업) www.k-startup.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www.rcms.go.kr		

※ 운영사는 민간 투자기관으로, 창업기업의 투자 협상 및 팁스 추천 등에 관한 문의만 가능, 팁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한국엔젤투자협회 팁스 사업부'로 문의, 각 지원사업 (팁스R&D, 연계지원사업)의 자격,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문의는 사업별 해당 기관으로 문의

[붙임1] 팁스 운영사(신청·접수처) 현황

[붙임2] 소재·부품·장비 및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

[붙임3] 팁스 신청제한 및 유의사항

[붙임4]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유의사항

[붙임5] 팁스 창업사업화 및 해외마케팅 관련 안내

[별 첨] 팁스 창업사업화 및 해외마케팅 사업계획서